

#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2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2일  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을 준용하고 있는 ‘관광취약계층’의 정의는 법령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, 관광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며, 그 밖에 타 조례 개정 후 일괄정비되지 않은 사항 등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 내용을 추가·보완함(안 제3조).
- 나.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문을 반영함(안 제4조제2항)

#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 “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한다)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관광약자를”을 “한다)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관광 활동”을 “관광활동”으로 한다.

2. “관광약자”란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3조 중 “관광 활동”을 “관광활동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6호 중 “활동 지원에”를 “활동지원을 위해”로 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“(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)”을 “(장애인 관광활동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관광 활동”을 “관광활동”으로, “활동 지원”을 “활동지원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2 중 “관광취약계층”을 “관광약자”로 수정한다.

안 제6조, 제7조, 제8조 중 “활동 지원”을 “활동지원”으로 각각 수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align="center"><u>서울특별시</u> <u>관광취약계층을 위한</u> <u>관광 활동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</u> 여행 기회를 <u>확대하고,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</p>	<p align="center"><u>서울특별시</u> <u>관광취약계층을 위한</u> <u>관광 활동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 계층의</u> ----- ----- <u>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 하여</u> ----- <u>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를 증진 하는 데 이바지함</u>----- 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 <u>한다)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</u></p>	<p align="center"><u>서울특별시</u> <u>관광취약계층을 위한</u> <u>관광 활동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<u>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</u> 말한</p>



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	<p><u>활동 지원</u></p>	<p><u>활동지원</u>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의2(무장애 관광 지원) 시장은 <u>관광약자</u>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,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무장애 관광 지원) <u>관광취약계층</u>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무장애 관광 지원) <u>관광약자</u></p>
<p>제6조(민간참여의 촉진) 시장은 관광<u>취약계층</u>을 위한 관광 <u>활동지원</u>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민간참여의 촉진)</p> <p><u>활동 지원</u></p>	<p>제6조(민간참여의 촉진)</p> <p><u>활동 지원</u></p>
<p>제7조(예산편성) 시장은 관광<u>취약계층</u>을 위한 관광 <u>활동지원</u>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·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예산편성) <u>활동 지원</u></p>	<p>제7조(예산편성) <u>활동지원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표창) 시장은 관광 광취약계층의 관광 <u>활동지원</u>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 에게 「서울특별시 <u>표창조례</u>」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 례의 시행에 <u>관하여</u>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표창) ----- -----<u>활동지</u> <u>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「서울특별시 표창 <u>조례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	<p>제8조(표창) ----- -----<u>활동지</u> <u>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(수정 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한다)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”을 “한다)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”로 하고, 같은조제3호 중 “하는데”를 “하는 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필요한 시책을 강구”를 “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**<신·구조문대비표>**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,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무장애 관광”이란 관광지,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·이용·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하는 데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, 이에 <u>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, 이에 <u>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-</u></p>
<p>제4조(관광지원기본계획) ① (생략)</p>	<p>제4조(관광지원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1. ~ 6. (생략)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-----  
-----  
-----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-----  
-----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